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425호 2020년 4월 13일(월)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13호) ····· 8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14호) ····· 9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15호) ····· 13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16호) ····· 14

○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17호) ····· 17

○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18호) ····· 25

○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19호) ····· 28

○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20호) ····· 34

○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21호) ····· 37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22호) ····· 41

○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23호) ····· 43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24호) ····· 46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25호) ····· 58

○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26호) ····· 62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327호) ····· 64

■ 고 시

○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121호) ····· 68

○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122호) ····· 70

○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하천의 지정(변경)·하천구역의 결정(변경)·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123호) ····· 75

○ 평해지구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124호) ····· 91

○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125호) ····· 93

■ 공 고

○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853호) ····· 96

○ 2020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861호) ····· 97

○ 박물관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863호) ····· 111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866호) ····· 112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867호) ····· 118

○ 측량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868호) ····· 123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870호) ····· 124

○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871호) ····· 134

○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872호) ····· 139

시 군

■ 고 시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0-65호) ····· 146

○ 안동 도시계획시설(옥송상록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0-64호) ····· 154

○ 영양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양군 고시 제2020-24호) ····· 156

○ 영덕 제2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영덕군 고시 제2020-34호) ····· 158

■ 공 고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5)]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0-808호) ····· 176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134호) 실시계획 열람공고
(상주시 공고 제2020-410호) ····· 180

○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3호) 실시계획 열람공고
(상주시 공고 제2020-414호) ····· 184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96호) 실시계획 열람공고
(상주시 공고 제2020-416호) ····· 189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4호) 실시계획 열람공고
(상주시 공고 제2020-417호) ····· 192

○ 경산도시계획시설(소로1-8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경산시 공고 제2020-588호) ····· 196

○ 의성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의성군 공고 제2020-661호) ····· 200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33호) ····· 204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34호) ····· 205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실시계획 정정 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0호) ····· 206

■ 공 고

○ 2020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정정공고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0-3호) ····· 209

◈◈◈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13호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3개 이상의”를 “3개를 초과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14호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6. “선정 대리인”이란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불복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정 대리인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제9장(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으로 하고,

제8장(제32조부터 제3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선정 대리인

제32조(이의신청인등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33조(선정 대리인의 위촉)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세무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2. 세무사
3. 공인회계사(「세무사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선정 대리인의 임기) ①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35조(납세자에 관한 정보보호)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6조(선정 대리인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 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선정 대리인의 포상 등)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제38조(선정 대리인의 실비변상)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선정 대리인 신청 · 통지 등)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등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

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선정 대리인 중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 ·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1조(종전의 제33조) 중 “제32조제1항”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장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 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임기 시작일로 한다.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15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마사회의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하는 승마투표권 및 장외발매소에서 경주 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16호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광 사업”을 “관광사업”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제31조제2항 관련)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관광사업 지원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40명 이상	3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8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50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17호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과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새로운 기술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신기술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다.「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라.「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2. “우수기술”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을 검토하여 지정·등록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4. “특수공법”이란 신기술 및 우수기술 외의 독점적 권리를 가진 공법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부서 또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1. 도 본청 및 의회사무처

2.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3.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도비지원 사업 중 해당 발주청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분야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급공사 및 주요 민간건설현장에서 선정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경상북도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공법선정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ㆍ촉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 우수기술 지정·등록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우수기술 심의·등록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우수기술 등의 선정
4.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사전성능검증 사항
5.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 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제9조의 심의·자문요청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서기, 회의 및 회의록, 비밀유지, 결과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심의·자문요청) ① 제6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공법(신기술, 우수기술 등)의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후보군(5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기술의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기술개발자가 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관급공사에 해당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우수기술의 지정·등록 및 신기술·우수기술 활용 촉진

제11조(우수기술의 지정·등록) ① 도지사는 기술개발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심의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우수기술로 지정·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기술 지정·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기술의 활용 노력 등) ① 발주청은 우수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과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우수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우수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신기술의 적용 관련 책임 규정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제14조(신기술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우수기술 명칭 또는 번호, 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 관련 관계 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그 밖에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도지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발주 및 공법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등록·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와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지를 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8조(포상) ① 도지사는 우수한 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우수기술 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우수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수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18호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경상북도에서 무궁화의 보급 · 관리 · 연구 ·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유

의 토지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자문) 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 · 단체 · 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정비,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
3. 무궁화 교육 · 연구개발 · 홍보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 · 상품생산 등 공익사업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장 · 군수 및 비영리 법인 · 비영리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체계적인 보급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무궁화 진흥사업에 기여한 공로

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 · 기관 ·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19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이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이하 "안전관리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안전관리시책을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 지역경찰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시책의 수립 및 변경

2.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현황조사

3.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산림자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지역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안전, 소방업무 분야별 과장급 1명

나. 환경보건 연구기관 또는 화학물질 측정분석기관의 과장급 1명

2. 위촉직 위원

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나. 지방환경관서의 화학물질 관련 부서장

다.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사업체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도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대기·물·토양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연구·조사 등)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등을 산하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 또는 모의 도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

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20호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 시 경상도의 연합의병인 창의정용군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의정용군이란 임진왜란 기간 중 영천성 수복 전투 등에서 국난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순국한 경상도 연합의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의정용군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의정용군의 역사·문화유산 복원

2. 창의정용군의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의 재조명

3. 창의정용군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가치 교육·홍보

4. 창의정용군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문화·예술 행사

5. 창의정용군 선양(宣揚)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6. 창의정용군 기념시설의 건립 및 운영

7. 그 밖에 창의정용군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조 요청)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21호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한국마사회 영천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

되는 지방세(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퍼센트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내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인프라 조성
3. 말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말이용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사육농가 등 말사업자 지원
4. 말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말산업 관련 연구·학술활동
6.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축산유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말산업 해당 업무 과장·소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말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농축산유통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축산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축산신산업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최초로 승마투표권을 발행하는 연도 다음 연도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22호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뜻)”을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로서”을 “사람으로서”로 하고, “생계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를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로 하며, “두고 거주하고 있는”을 “두고 있는”으로 하며,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월 90만원”을 “월 100만원”으로, “2인”을 “2명”으로 , “1인을”을 “1명을”로, “1인당 30만원을”을 “1명당 50만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중 “세부적인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23호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층수를 포함한다): 50퍼센트 미만

제7조의 제목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를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같은 항 제12호 각 목의 시

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2”로 한다.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해당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 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 · 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 ·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24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이하 “본대”라 한다)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대의 현원이 정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소속 본대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정원은 본대의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분류 중 건축, 토목, 건설기계운전, 자동차, 용접,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에너지·기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의 일반조종면허를 가진 사람
3. 산악구조협회 등에서 산악구조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을 보유한 사람
5. 소방 관련 또는 구급에 관한 학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⑤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 또는 활동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신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은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면직·해임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고문의 위촉)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한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조직) 제2조제1항에 따라 본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대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추천)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의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다.

②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대장 및 부대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9조(정원)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읍지역 : 40명 이내
2. 면지역 : 30명 이내
3. 지역대 : 20명 이내
4. 전문·전담의용소방대 : 시·읍, 면지역, 지역대 정원 이내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는 제1항의 정원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시·군별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0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의용소방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중에서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간사로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 ①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설치

2.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의 지정 및 취소

3. 법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신규임명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소집금지

5.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의 지정 및 취소

6. 제2조제5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해산 및 활동정지

7. 제18조의 성과중심의 보상 심의(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8.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추천

9.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12조(전담의용소방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을 지정한 장소에서 1일 4시간 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 복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도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등) ①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은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지도·감독) 의용소방대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①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2년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미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되었을 때에는 2년 이내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이 기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6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17조(소집수당) 소집수당은 매월 임무를 수행한 총시간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성과중심의 보상)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견학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과 소방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 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20조(설립) 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별로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지역연합회의 기 및 표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합회는 기를 두고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업무) 지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리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등

제23조(회원 등) ① 도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소방서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를 대표하는 연합회장으로 하고 소방서연합회의 회원은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는 대장으로 한다.

② 도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소방서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

명한다.

제24조(회장 등의 임기) ① 도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한다.

④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중 대장의 직위에서 면직되었을 때에는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당연히 종료한다. 또한 소방서연합회장의 직위에서 면직되었을 때에도 도연합회장의 임기는 당연히 종료한다.

제25조(자격정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지역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6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소방서연합회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7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대 통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현원이 정원의 2분의 1 이하인 지역대의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현원을 정원의 2분의 1 초과하도록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대장, 지역연합회장의 임기개시일 규정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대장 및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개시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조례 시행 후 임명된 대장 또는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개시일은 종전 대장 또는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하며, 대장의 임기는 만료일이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종료하고,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대장·부대장 및 신규 의용소방대원 중 제15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이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조(소방서연합회장 연임에 관한 적용례) 소방서연합회장에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된 소방서연합회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소방서연합회장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6조(의용소방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경상북도 조례 제3629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도연합회의 연임규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도연합회장의 연임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25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지역의 대원 경력을 포함한다.

제3조(신청 등)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원의 자녀는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장학생 선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조의 자격자 중 다음 각 호 해당자를 우대하여 심사하고, 선발ㆍ결정한다.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4. 추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5. 「상훈법」에 의한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6.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7.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원의 자녀

② 장학생은 동일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소방서 관할 구역 장학생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의 수는 소방서 관할구역별 매년 1월 1일 기준 의용소방대원 수의 100분의 5로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비율은 장학생 수의 범위에서 조정·선발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선발된 해당 연도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고등학생의 해당 연도 장학금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한 고등학교 1급지 공립 일반계열 수업료 연액 이내로 한다. 대학생의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편성 및 지급) ① 경상북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생은 매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제적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자퇴 또는 휴학을 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정당하게 선발하여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할 수 없으며, 정지 사유 발생 이후 지급을 정지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26호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

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각급학교 교사 및 청소년단체 지도자 등을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 조례 제4327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다지역〉의 “삼근초등학교” 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경상북도교육청 울진학생수련원” 란 다음에 “삼근초등학교”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치	
울진군	서면 삼근2길 23	삼근초등학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
2. 벽지
〈다지역〉
<table>
<tr><th colspan="2">기관소재지</th><th rowspan="2">기관명</th></tr>
<tr><th>시·군·구</th><th>위치</th></tr>
<tr><td>울진군</td><td>서면 삼근2길 23</td><td>삼근초등학교</td></tr>
</table>
〈라지역〉
<table>
<tr><th colspan="2">기관소재지</th><th rowspan="2">기관명</th></tr>
<tr><th>시·군·구</th><th>위치</th></tr>
<tr><td>〈신</td><td></td><td>설〉</td></tr>
</table></td><td>[별표]
2. 벽지
〈다지역〉
<table>
<tr><th colspan="2">기관소재지</th><th rowspan="2">기관명</th></tr>
<tr><th>시·군·구</th><th>위치</th></tr>
<tr><td>〈삭</td><td></td><td>제〉</td></tr>
</table>
〈라지역〉
<table>
<tr><th colspan="2">기관소재지</th><th rowspan="2">기관명</th></tr>
<tr><th>시·군·구</th><th>위치</th></tr>
<tr><td>울진군</td><td>서면 삼근2길 23</td><td>삼근초등학교</td></tr>
</table></td></tr>
</table>

◈◈◈

경상북도 고시 제2020－121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착오지정으로 인한 지정 해제

3.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 054-778-38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내역서

사업소재지내역				지적(㎡)	사방지 현황(㎡)				사업 종류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지정년원일 (고시번호)			
합 계			1필지	815	96	96	0				
영덕계			1필지	815	96	96	0				
영덕	강구	하저	11	815	96	96	0	2020-2-27(57)	산사태 복구	착오 지정	

경상북도 고시 제2020- 122호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농지법 제30조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49,603.6㏊(감 0.8ha)

■ 농업진흥구역 : 124,173.3㏊(감0.8ha)

■ 농업보호구역 : 25,430.3㏊(변동없음)

2. 농업진흥지역 증감 내역

(단위 : ha)

구분	시군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증 감
경북도		149,603.6	124,173.3	25,430.3	감0.8
해제	청송군	3,872.8	2,955.5	917.3	감0.8

3.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 : ≪참고 2≫ 별도 기재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 1≫

농업진흥지역 시·군별 지정현황

2020. 4. 13.기준

(단위 : ha)

시군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시군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149,603.6	124,173.3	25,430.3				
포항시	7,582.6	6,478.1	1,104.4	의성군	15,292.3	12,517.0	2,775.3
경주시	10,272.1	8,431.0	1,841.1	청송군	3,872.8	2,955.5	917.3
김천시	7,877.0	6,863.7	1,013.3	영양군	2,223.8	1,898.5	325.3
안동시	7,335.8	6,338.8	997.0	영덕군	3,569.3	3,123.6	445.6
구미시	8,074.2	7,306.2	768.0	청도군	6,120.1	4,375.8	1,744.4
영주시	5,604.9	4,816.2	788.6	고령군	4,342.4	3,982.8	359.6
영천시	10,289.3	7,113.6	3,175.8	성주군	7,193.0	6,005.1	1,187.9
상주시	16,435.7	14,244.0	2,191.7	칠곡군	2,078.8	1,696.5	382.3
문경시	6,128.7	5,015.2	1,113.5	예천군	9,785.8	8,571.9	1,214.0
경산시	5,506.7	3,987.7	1,519.0	봉화군	3,156.1	2,662.9	493.2
군위군	5,023.2	4,287.0	736.2	울진군	1,839.2	1,502.4	336.8

≪참고 2≫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

○ 증감일 : 2020. 4. 13.

(단위 : ha)

시군	구분	위 치	사 유	증감면적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8	△0.8	-	-
청송군	해제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715-11번지 외 7필지	청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 : 청송소방서 건립	△8	△0.8	-	-
		이 하	여 백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진흥지역 해제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8 필지		8,265	8,265	8,265	8,265	0	
1	청송	청송	금곡	635	답	1,659	1,659	1,659	1,659	0	
2	청송	청송	금곡	705	답	1,528	1,528	1,528	1,528	0	
3	청송	청송	금곡	705 - 1	잡	1,700	1,700	1,700	1,700	0	
4	청송	청송	금곡	705 - 2	도	508	508	508	508	0	
5	청송	청송	금곡	705 - 3	답	1,238	1,238	1,238	1,238	0	
6	청송	청송	금곡	715 - 7	대	174	174	174	174	0	
7	청송	청송	금곡	715 - 8	답	489	489	489	489	0	
8	청송	청송	금곡	715 - 11	잡	969	969	969	969	0	

경상북도 고시 제2020-123호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하천의 지정(변경)·하천구역의 결정(변경)·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지방하천 이안천 등 5개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같은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지정(변경), 같은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홍수관리구역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관리

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분석과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하천관리방안의 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 현황

수 계	하천명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우량 (㎜)	수자원 총 량 (백만㎥)	유출량(백만㎥)			손실량 (백만㎥)
					홍수시	평상시	계	
낙동강	이안천	239.53	1,215.23	291.08	115.38	50.98	166.36	124.72
	대중천	27.53	1,278.97	35.21	11.27	6.76	18.03	17.18
	시암천	33.83	1,250.19	42.29	14.14	8.69	22.83	19.46
	지평천	25.41	1,284.10	32.63	10.74	7.85	18.59	14.04
	지산천	29.79	1,233.22	36.74	13.30	5.58	18.88	17.86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계획규모 (년)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이안천	이안천 종점 (영강(지방) 합류점)	80	969	970
	신덕천(소) 합류전	80	914	915
	은추리골(세) 합류전	80	904	905
	지산천 합류전	80	768	770
	이안천교 지점	80	756	760
	세천 합류전	80	737	740

하천명	주요지점명	계획규모 (년)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이안천	지평천 합류전	80	607	610
	대현천(소) 합류전	80	603	605
	시암천 합류전	80	473	475
	대중천 합류전	80	350	350
	우산천(소) 합류전	80	327	330
	큰삼밭골(세) 합류전	80	326	330
	예서천(소) 합류전	80	306	310
	희골(세) 합류전	80	298	300
대중천	대중천 종점 (이안천(지방) 합류점)	80	205	205
	신산골천 합류전	80	194	195
	작은도덕골천 합류전	80	190	190
	연애골천 합류전	80	161	165
	대천천(소) 합류전	80	59	60
	대중천 기점	80	57	60
시암천	시암천 종점 (이안천(지방) 합류점)	80	290	290
	요라이골천 합류전	80	290	290
	봉림천(소) 합류전	80	255	255
	가정골천 합류전	80	241	245
	남곡천(소) 합류전	80	127	130

하천명	주요지점명	계획규모 (년)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시암천	앞실천(소) 합류전	80	89	90
	시암천 기점	80	82	85
지평천	지평천 종점 (이안천(지방) 합류점)	80	212	215
	지평저수지 합류전	80	189	190
	아실천(소) 합류전	80	180	180
	두곡천(소) 합류전	80	108	110
	양다말천(소) 합류전	80	70	70
	지평천 기점	80	7	10
지산천	지산천 종점 (이안천(지방) 합류점)	80	209	210
	소암1양배수장 합류전	80	199	200
	증촌교 지점	80	199	200
	세월교 지점	80	182	185
	둑안들물 합류전	80	182	185
	새박골물 합류전	80	158	160
	문창천(소) 합류전	80	129	130
	말암실천(소) 합류전	80	98	100
	절골천(소) 합류전	80	52	55
	지산천 기점 (안룡저수지 지점)	80	38	40

- 이안천은 하류부 지류하천인 지평천에 위치한 지평저수지의 홍수조절방안을 고려하여 산정한 계획홍수량을 전량 하도내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음.
- 대중천, 시암천, 지평천, 지산천은 지역별 홍수배분 계획은 없으며, 홍수량을 전량 하도내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음.

라.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이안천	No.0+000	이안천 종점 (영강(지방) 합류점)	1,026	969	1,030	970	56.75	55.81	290	224
	No.1+400	신덕천(소) 합류전	-	914	-	915	58.52	57.67	270	254
	No.3+500	은추리골(세) 합류전	-	904	-	905	62.06	60.59	270	271
	No.5+800	지산천 합류전	988	768	990	770	66.15	65.66	200	181
	No.8+000	이안천교 지점	-	756	-	760	70.68	70.14	195	192
	No.10+700	세천 합류전	-	737	-	740	77.44	75.37	70	60
	No.12+400	지평천 합류전	923	607	920	610	82.04	80.61	80	76
	No.13+800	대현천(소) 합류전	-	603	-	605	84.01	83.38	110	112
	No.21+400	시암천 합류전	786	473	790	475	104.31	103.73	60	74
	No.25+000	대중천 합류전	656	350	660	350	118.29	117.04	60	73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이안천	No.29+000	우산천(소) 합류전	-	327	-	330	131.74	131.28	60	78
	No.31+300	큰삼밭골(세) 합류전	-	326	-	330	143.95	144.34	55	57
	No.35+000	예서천(소) 합류전	-	306	-	310	166.70	165.00	60	59
대중천	No.0+000	대중천 종점 (이안천(지방) 합류점)	-	205	-	205	-	117.04	-	55
	No.0+600	신산골천 합류전	-	194	-	195	-	122.84	-	48
	No.2+175	작은도덕골천 합류전	-	190	-	190	-	139.85	-	46
	No.4+400	연애골천 합류전	-	161	-	165	-	175.17	-	45
	No.5+255	대천천(소) 합류전	-	59	-	60	-	189.09	-	15
	No.7+242	대중천 기점	-	57	-	60	-	214.66	-	15
시암천	No.0+000	시암천 종점 (이안천(지방) 합류점)	-	290	-	290	-	103.73	-	36
	No.0+550	요라이골천 합류전	-	290	-	290	-	106.69	-	30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시암천	No.2+350	봉림천(소) 합류전	-	255	-	255	-	113.55	-	41
	No.2+650	가정골천 합류전	-	241	-	245	-	114.59	-	36
	No.2+850	남곡천(소) 합류전	-	127	-	130	-	115.75	-	20
	No.4+550	앞실천(소) 합류전	-	89	-	90	-	126.40	-	15
	No.5+077	시암천 기점	-	82	-	85	-	130.11	-	12
지평천	No.0+000	지평천 종점 (이안천(지방) 합류점)	-	212	-	215	-	80.81	-	70
	No.1+900	지평저수지 합류전	-	189	-	190	-	93.85	-	50
	No.2+600	아실천(소) 합류전	-	180	-	180	-	94.44	-	35
	No.3+825	두곡천(소) 합류전	-	108	-	110	-	102.22	-	20
	No.4+700	양다말천(소) 합류전	-	70	-	70	-	108.86	-	15
	No.6+000	지평천 기점	-	7	-	10	-	140.06	-	15
지산천	No.0+000	지산천 종점 (이안천(지방) 합류점)	-	209	-	210	-	65.60	-	139

하천명	주요지점명		기본홍수량 (㎥/sec)		계획홍수량 (㎥/sec)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산천	No.0+015	소암1 양배수장 합류전	-	199	-	200	-	65.60	-	114
	No.0+878	증촌교 지점	-	199	-	200	-	68.80	-	52
	No.1+916	세월교 지점	-	182	-	185	-	73.41	-	88
	No.3+300	둑안들물 합류전	-	182	-	185	-	81.06	-	60
	No.4+300	새박골물 합류전	-	158	-	160	-	87.69	-	42
	No.5+000	문창천(소) 합류전	-	129	-	130	-	94.08	-	45
	No.5+800	말암실천(소) 합류전	-	98	-	100	-	103.11	-	41
	No.6+558	절골천(소) 합류전	-	52	-	55	-	114.08	-	31
	No.7+600	지산천 기점 (안룡저수지 지점)	-	38	-	40	-	139.75	-	19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구간 또는 측점	지구 구분	비고
이안천	No.0+000 ~ No.4+820(좌안), No.0+000 ~ No.4+820(우안), No.8+184 ~ No.16+418(좌안), No.8+184 ~ No.17+714(우안), No.17+714 ~ No.21+400(좌안), No.18+200 ~ No.18+800(우안), No.19+788 ~ No.23+188(우안), No.23+954 ~ No.35+514(좌안), No.24+117 ~ No.33+950(우안), No.36+460 ~ No.38+356(좌안), No.34+050 ~ No.38+356(우안)	보전지구	일반 보전지구
	No.4+820 ~ No.8+184(좌안), No.4+820 ~ No.8+184(우안)	보전지구	특별 보전지구
	No.16+418 ~ No.17+714(좌안), No.17+714 ~ No.18+200(우안), No.18+800 ~ No.19+788(우안), No.21+400 ~ No.23+954(좌안), No.23+188 ~ No.24+117(우안), No.35+514 ~ No.36+460(좌안)	복원지구	
	No.33+950 ~ No.34+050(우안)	친수지구	친수 거점지구
대중천	No.0+000~No.2+175(좌안), No.0+000~No.3+800(우안) No.2+700~No.5+186(좌안), No.5+100~No.7+242(우안) No.5+186~No.7+242(좌안)	복원지구	
	No.2+175~No.2+700(좌안), No.3+819~No.5+100(우안)	보전지구	일반 보전지구

하천명	구간 또는 측점	지구 구분	비고
시암천	No.0+000~No.0+737(우안)	보전 지구	일반 보전지구
	No.0+000~No.2+565(좌안), No.0+737~No.2+822(우안) No.2+565~No.5+077(좌안), No.2+822~No.5+077(우안)	복원 지구	
지평천	No.0+000~No.1+900(좌안), No.0+000~No.1+900(우안)	보전 지구	일반 보전지구
	No.1+900~No.3+400(좌안), No.1+900~No.3+400(우안) No.3+400~No.5+700(좌안), No.3+400~No.5+700(우안) No.5+700~No.6+000(좌안), No.5+700~No.6+000(우안)	복원 지구	
지산천	No.0+000~No.1+489(좌안), No.0+000~No.1+489(우안) No.1+928~No.2+156(좌안), No.1+928~No.2+156(우안)	보전 지구	특별 보전지구
	No.1+489~No.1+928(좌안), No.1+489~No.1+928(우안) No.2+156~No.4+710(좌안), No.2+156~No.4+710(우안) No.4+710~No.7+600(좌안), No.4+710~No.7+600(우안)	복원 지구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상북도(하천과) 및 하천의 관할지역인 상주시(건설과), 문경시(안전재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경상북도 하천과(054-880-4070), 상주시 건설과(054-537-7558), 문경시 안전재난과(054-550-3831) 끝.

2.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지방하천 이안천 등 5개 하천의 지정(변경)을 「하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 합니다.

□ 지방하천의 구분 및 지정 변경 사항

하천명	하천 등급	당초 변경	구간			변경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이안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경북 상주시 함창읍 영강(지방) 합류점	38.50	변경된 본류(영강)의 경계부 반영과 금회 현장조사 및 현황 측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연장 조정
		변경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259번지선	경북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5-3번지선 영강(지방) 합류점	38.36	
대중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안천(지방) 합류점	7.00	금회 현장조사 및 현황 측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연장 조정
		변경	경북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 469번지선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199-4번지선 이안천(지방) 합류점	7.24	
시암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문경시 농암면 선곡리	경북 상주시 공검면 이안천(지방) 합류점	6.25	당초 기점부의 선곡천(소하천) 종점부 경계 반영에 따른 하천연장 조정
		변경	경북 문경시 농암면 선곡리 309번지선	경북 상주시 은척면 하흘리 357-9번지선 이안천(지방) 합류점	5.08	
지평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상주시 이안면 구미리 경계점	경북 상주시 공검면 이안천(지방) 합류점	7.40	당초 기점부 현장조사 및 측량조사 결과를

하천명	하천 등급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변경	경북 상주시 이안면 구미리 939번지선	경북 상주시 공검면 지평리 246-1번지선 이안천(지방) 합류점	6.00	바탕으로 기점부 구간 조정에 따른 하천연장 조정
지산천	지방 하천	당초	경북 상주시 이안면 안용리	경북 상주시 이안면 이안천(지방) 합류점	6.50	당초 기점부 상류의 하천 미지정 구간 (안룡저수지 방수로 직하류)을 지산천 지방하천 기점으로 변경에 따른 하천연장 조정
		변경	경북 상주시 이안면 안용리 154-2번지선 안룡저수지 방수로 종점	경북 상주시 이안면 이안리 344번지선 이안천(지방) 합류점	7.60	

□ 지정·변경일 : 고시일과 같음

3. 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상북도(하천과) 및 상주시(건설과), 문경시(안전재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이안천	지방 하천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259번지선	경북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215-3번지선 영강(지방) 합류점	38.36	4,932,635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 계획(변경)
대중천	지방 하천	경북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 469번지선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199-4번지선 이안천(지방) 합류점	7.24	315,820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 계획수립
시암천	지방 하천	경북 문경시 농암면 선곡리 309번지선	경북 상주시 은척면 하흘리 357-9번지선 이안천(지방) 합류점	5.08	237,307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 계획수립
지평천	지방 하천	경북 상주시 이안면 구미리 939번지선	경북 상주시 공검면 지평리 246-1번지선 이안천(지방) 합류점	6.00	708,061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 계획수립
지산천	지방 하천	경북 상주시 이안면 안용리 154-2번지선 안룡저수지 방수로 종점	경북 상주시 이안면 이안리 344번지선 이안천(지방) 합류점	7.60	555,008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 계획수립

붙 임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열람장소 비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경상북도 하천과(054-880-4070), 상주시 건설과(054-537-7558), 문경시 안전재난과(054-550-3831) 끝.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홍수관리구역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상북도(하천과) 및 상주시(건설과), 문경시(안전재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이안천	지방 하천	경북 상주시 공검면 예주리 산1번지선	경북 상주시 공검면 예주리 875-1번지선	0.52	5,669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경북 상주시 공검면 지평리 277번지선	경북 상주시 공검면 지평리 249-2번지선	0.30	14,746	
		경북 상주시 공검면	경북 상주시 공검면	0.31	5,621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지평리 363번지선	지평리 359번지선			
		경북 상주시 공검면 중소리 311번지선	경북 상주시 공검면 중소리 산48번지선	0.25	7,942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91번지선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95번지선	0.33	7,518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193-2번지선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301번지선	0.04	132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245번지선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245번지선	0.06	580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산35-6번지선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285-2번지선	0.22	1,115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만리 966번지선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만리 산79번지선	0.37	10,480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	결정(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		
대중천	지방 하천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313번지선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68-2번지선	0.13	1,922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계획수립
시암천	지방 하천	경북 상주시 은척면 봉중리 18번지선	경북 상주시 은척면 봉중리 10번지선	0.12	2,053	·결정일 : 고시일 ·결정사유 : 하천기본계획수립

※ 지평천, 지산천은 홍수관리구역 지정 없음.

붙 임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열람장소 비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경상북도 하천과(054-880-4070), 상주시 건설과(054-537-7558), 문경시 안전재난과(054-550-3831) 끝.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경상북도 고시 제2020 - 124호

평해지구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평해지구 재해복구사업을 시행계획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목적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배수장을 설치하여 재해복구, 농작물 침수방지 및 영농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경상북도 평해읍 평해리 일원

○ 수혜면적 : 43.1ha

○ 사업내용

- 평해2배수장 : Q=11.5㎥/s (∅1,350㎜×260kW×3대, ∅600㎜×65kW×1대)

- 평해2배수잠관 (1.5×1.5×3련) L=21m, 유수지 : A= 3,260㎡

3. 사업비소요액 : 8,356,800천원

4. 사업 예정기간 : 2020. 4.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장

6.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전화 054-730-5067)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0 -125호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해제 고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고시 제2006-522(2006.12.28.)호 및 경상북도 고시 제2013-284(2013.6.27.)호로 지정 고시된『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주)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현황

ㅇ 명 칭 :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주)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ㅇ 위치/면적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178 / 63,890.80㎡

ㅇ 지정일자 : 2006. 12. 28.

ㅇ 변경 지정일자 : 2013. 6. 27.

ㅇ 사업내용 : PDP용 유리기판 제조·판매

2. 외국인투자지역 해제사유

ㅇ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되어 2006년 12월 28일 지정 고시된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주)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이 PDP용 유리기판 사업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정을 해제함.

◈◈◈

경상북도 공고 제2020- 853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 신규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업 체 명 : (주)케이아이환경

2. 대 표 자 : 곽성운

3. 소 재 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11길 36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대기 제11호

6. 등록일자 : 2020.04.8.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861호

2020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도내 중소기업근로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장학생 선발개요

- 근 거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 지급금액
  - 고등학생 : 연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 대 학 생 : 연 3백만원
- 지급시기 : 연 1회 지급

2. 장학생 추천권자

• 시장 · 군수, 근로자 · 경영자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 · 단체

3. 장학생 추천

가. 추천기준(공통사항)

①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의 소재지 및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 근로자(공고일 현재 동일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아래 성적기준 이상인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연도(2020년) 월평균 가구 중위소득 기준 이하인 자

나) 산업재해 및 기타사유로 가정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성적기준

구 분		성적기준
재학생	고등학생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100이상인 사람
	대 학 생	재적학과 평균등급(평점)이 C 이상인 사람
신입생	고등학생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사람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으로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특별전형 등 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 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2020년 월평균 가구 중위소득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그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근로자의 자녀

(단, 기업대표 수상자는 소속직원에게 장학금을 추천할 수 있다)

⇒ 위 ①, ②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천가능

나. 추천제외자

-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자

(단, 타 장학금 수혜대상자 고등학생은 연간 50만원, 대학생은 연간 200만원 미만인 자 추천가능)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라도 자녀가 타 시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은 제외), 추천일 현재 휴학중인 대학생
-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학생)

다. 추천시 유의사항

- 근로자는 생산현장의 장기 근속자를 우선하여 추천하되, 기업체별 고르게 선발할 예정이므로 한 기업체에 편중되게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사실확인 등을 통해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추천권자)

※ 기업체 및 타기관등 학자금 지원여부 반드시 확인

- 사실조사 확인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시 구체적으로 작성(부서장 확인)

- 대학생의 경우 추천일 현재 휴학여부를 반드시 확인
- 1세대 1자녀 추천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1호에 규정한 자를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천시 유의
- 구비서류를 고의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될 시 지급 결정 후라도 지급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추천서류

- 추천권자(시장·군수, 근로자·경영자단체,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① 장학생 추천자 명단 1부 [서식 1]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서식 2]

  ③ 사실조사 확인서 1부 [서식 3] **※ 확인내용 여부 반드시 기재**

  ④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추천기관장) 1부 [서식 4]
- 신청인(근로자 및 근로자의 자녀)

  ⑤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서식 5]

  ※ 1. 예금주는 부모명의로 기재(통장 사본 제출)

  2. 근로자 재산상황 유의사항

  - 월평균 소득액 :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분리 작성(주민등록등본 기준)

  소득있는 가구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히 제출

  - 재산가액 : 토지와 건물 각 기준 준수하여 구분 기재

  ⑥ 학교장 또는 총장 추천서 1부(성적증명서 첨부) [서식 6]

⑦ 재학증명서(학생) 1부

⑧ 재직증명서(근로자) 1부 **※ 기업체 소재지(근로자 근무지 주소) 기재**

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가구주 및 가구원)

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가구주 및 가구원)

⑪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⑫ 주민등록등본 1부

⑬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기업체) 1부 [서식 7]

⑭ 당해연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영수증(고등학생) 사본 1부

⑮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서식 8]

마. 선발기준

- 추천인원 중 지역별 업체수, 근로자수,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장학생 접수기한 : 2020. 5. 12.(화)까지

나. 접 수 처

- 시·군 노동업무 담당부서
- 근로자단체

5. 기타사항

가. 신청서식은 도내 23개 시군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활용

나. 문 의 처

- 경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054-880-2742)
- 시·군 노동업무 담당부서(경제노동과, 노동복지과, 지역경제과 등)

[서식 1]

장학생 추천자 명단

추천 순위	근 로 자				학 생			
	업체명	성 명	연 령	근무기간	학교명	학 과	학 년	성 적

※ 성적기재 기준

○ 고등학생

- 신입생 :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 재학생 :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람

○ 대 학 생

- 신입생 : 직전학기 성적으로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특별전형 등 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 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 재학생 : 재적학과 평균등급(평점)이 C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020년 월 일

기관장명 : ○ ○ ○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ㅇ 학생

성 명	학 교 명	학과	학년	생년월일	근로자와의 관 계
(한글)					
(한자)					

ㅇ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기업 현황			
			업체명	업 종	직 책	소재지
(한글)						
(한자)						

위 학생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1.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업생산성 향상 및 산업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20년 월 일

기관장명 : ○ ○ ○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3]

사 실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근 로 자		학 생	
소 속 회 사		소 속 학 교	
직 위		학 년	
성 명		성 명	

2. 확인내용

○ 근로자 소속회사의 중소기업 여부 :

○ 근로자의 회사근무 여부 :

○ 추천기준 적합 여부 :

○ 장학금 지급신청서 내용 사실 여부 :

○ 당해학교, 기업체, 타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 여부 :

○ 수업료 면제 수혜 여부 :

○ 휴학 여부(대학생의 경우) :

2020년 월 일

(확 인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4]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추천기관장 확인용]

1. 인적사항

근 로 자		학 생	
소 속 회 사		학교 및 학과	
직 위		학 년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성 명		성 명	

2. 확인 내역

장학금 수혜여부	
장학금 수혜 내역	장학금 명 : 장학금액 : 원

상기 학생에 대하여 본 시(군) 지급 장학금 수혜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기관장명 : ○ ○ ○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5]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table>
<tr><td colspan="7">* 학 생 인 적 사 항</td><td rowspan="5">사 진
(3×4㎝)</td></tr>
<tr><td>성 명</td><td colspan="2">(한글) (한자)</td><td>성 별</td><td colspan="2">남 · 여</td></tr>
<tr><td>생년월일</td><td colspan="5">년 월 일(만 세)</td></tr>
<tr><td>자택주소</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 colspan="2">( ) -</td></tr>
<tr><td rowspan="2">소 속
학 교</td><td>소재지</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고등학교 · 대학(교) 학과 학년</td></tr>
<tr><td colspan="8">* 근 로 자 재 직 사 항</td></tr>
<tr><td>학생과의
관 계</td><td>성 명</td><td>생년월일</td><td>업 체 명</td><td>재직기간</td><td colspan="2">타장학금
수혜여부</td><td>재직확인</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거 래
금융기관</td><td>금융기관명</td><td></td><td>계좌번호</td><td colspan="2"></td><td>예금주</td><td></td></tr>
<tr><td colspan="8">* 근 로 자 재 산 상 황</td></tr>
<tr><td rowspan="2">주 거
상 황</td><td rowspan="2">자택( ) 전세( )
기타( )</td><td colspan="3">월평균 소득액(천원)</td><td colspan="3">재 산 가 액(천원)</td></tr>
<tr><td>계</td><td>가구주</td><td>가구원</td><td>계</td><td>토 지</td><td>건 물</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8">※ 가구주(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근무처에서 발행)
(재산가액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 기준)</td></tr>
<tr><td colspan="8">* 가 족 사 항 (등본상 동거인 위주로 작성, 장학금 신청자 외 미성년자 제외, 배우자 포함)</td></tr>
<tr><td>관 계</td><td>성 명</td><td>생년월일</td><td colspan="3">학력</td><td colspan="2">직장(직업) 직위</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r>
</table>

※ 1. 예금주는 부모명의로 기재(통장사본 제출)

2. 근로자 재산상황 유의사항 : ① 월평균 소득액 : 가구주와 가구원으로 분리 작성(주민등록등본 기준), 소득있는 가구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히 제출 ② 재산가액 : 토지와 건물 각 기준 준수하여 구분 기재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중소기업근로자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1부

신청인 (학 생) (인)
보호자 (근로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6]

학 교 장 추 천 서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학 교 명 : 학교 학과 학년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으로 다음과 같이 귀 도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직전학기 성적

고등학생		신입생 (석차/학년전체)	대 학 생	
학년/학기	5등급이상과목수/ 전체과목수		학년/학기	평균등급 (평점)
/	/ (%)	/	/	
〈구비서류〉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고등학생 : “5등급” 이상 과목수의 전체과목수에 대한 비율 기재
대 학 생 : 등급 A^{+}, A^{0}, A^{-}, B^{+}, B^{0}등의 평균등급 기재
신 입 생 : 입학성적(학년석차)을 기재
(※ 단, 대학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의 “5등급” 이상 과목수의 비율 기재)

○ 타 장학금 수혜여부(해당년도)
· 장학금명 : · 지급기관(단체)명 :
· 수혜금액 :

○ 재학 여부(휴학·정학 기록 표시) 및 품행 등에 대한 의견
·

2020년 월 일

○ ○ 교 장(총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7]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기업체 대표 확인용]

1. 인적사항

1. 소속 기업			
회 사 명	대표자	근로자수	업 종
		명	
소재지			

2. 신청 근로자				
성명(한글)	재직기간	소속 부서(팀)명	연락처 (휴대폰)	재직여부 (퇴직시 해당일자 기록)
주 소				

2. 확인 내역

장학금 수혜여부	
장학금 수혜 내역	장학금 명 : 장학금액 : 원

상기 학생에 대하여 본사 지급 장학금 수혜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 ○ 대표이사(사장)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8]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신청에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제17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교,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3년 동안 위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선발·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근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863호

박물관 등록 공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등 록 내 용 -

명칭	등록 일자	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자 및 (대표자)	종류 및 유형
김천시립 박물관	2020.4.10.	경북-공립12-2020-02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130	김천시장 (김천시장)	제1종 전문박물관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866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에 따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특구 개요

○ 명 칭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위 치 : 포항 영일만일반산업단지 및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일원, 포항 남구 해도동 일원

○ 면 적 : 총 742,470.82㎡

2. 특구 변경계획(안) 주요내용

○ 특구 면적 확대 : (당초) 563,918.82 ㎡ → (변경) 742,470.82 ㎡

○ 실증사업 특구사업자 추가 : (당초) 6개 기업 및 기관 → (변경) 14개

3. 열람기간 : 2020. 4. 20.(월) ~ 2020. 5. 13.(수) 18:00까지

(09:00 ~ 18: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4. 열람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202호 (전화: 054-880-2476)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0. 4. 20.(월) ~ 2020. 5. 13.(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E-mail)로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 제출가능

- 주 소 : (38542)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 이메일 : care35@korea.kr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054-880-24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변경(안)

□ 특구지정 개요

○(목적)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치 · 면적) 포항 영일만산단 및 블루밸리국가산단 일원 총 563,918.82 ㎡

○(사업자/지정기간) ㈜에코프로지이엠 등 6개 기업 · 기관/ ‘19.8~’ 23.8(4년)

□ 지정변경 현황 : 면적추가(178,552㎡)/ 특구사업자 추가(10개사)·삭제(2개사)

① 특구 면적 추가(178,552㎡)

당 초	변 경
■ 포항 영일만산단 및 블루밸리국가산단 일원 총 563,918.82 ㎡	■ 포항 영일만산단 및 블루밸리국가산단 일원, 포항 남구 해도동 일원 총 742,470.82 ㎡ *(추가) 총 178,552 ㎡ (①GS건설㈜ : 포항 영일만4산단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부지 172,858 ㎡, ②뉴테크엘아이비 :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내 배터리 음극재 리사이클링 공장부지 4,188 ㎡, ③SK이노베이션, 신화테크 : 포항 남구 해도동내 재사용 배터리 적용 ESS 실증부지 1,506 ㎡)
【변경사유】 ■ ①특구사업자 GS건설㈜ 특구내 이전 및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건설을 위해 영	

당 초	변 경
일만4산단내 공장부지 172,858 ㎡ 추가(현재 포항시와 토지매입 협의 中) *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1,000억원 투자 협약식('20.01.09, VIP참석행사) 후속 조치 ■ ②뉴테크엘아이비 배터리 음극재 리사이클링 공장 건설을 위해 블루밸리국가산단내 공장부지 4,188 ㎡ 추가(' 19.12월 토지매입 완료) ■ ③SK이노베이션, 신화테크 재사용 배터리 적용 ESS 구축·운영 및 전기차 충전 실증을 위해 포항시 남구 해도동내 실증부지 1,506 ㎡ 추가	

② 특구계획 내 세부사업 특구사업자 추가(10개사)·삭제(2개사)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1세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 경북TP, ㈜성호기업 2개사	■ 경북TP 등 3개사 -(추가) ㈜해동엔지니어링, 한국환경공단 -(삭제) ㈜성호기업
(2세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 에스아이셀, ㈜피플웍스 2개사	■ ㈜에스아이셀 등 8개사 -(추가) ㈜포엔, ㈜에임스, ㈜피엠그로우, ㈜엔씨이노션, ㈜솔라라이트, SK이노베이션, 신화테크 -(삭제) ㈜피플웍스
(3세부)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 ㈜에코프로GEM, GS건설㈜ 2개사	■ ㈜에코프로GEM 등 3개사 -(추가) ㈜뉴테크엘아이비
【변경사유】 ○(총괄)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각 세부사업별로 특구사업자를 확대가 필요하여 신규사업자 10개社 추가, 대표이사 교체로 인한 의사결정 변경 및 경영악화 등 사유로 특구사업자 포기에 따른 2개社 삭제		

붙임 2

[서식- 전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의견서

제 출 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 의견			

「경북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후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867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계획(안)」 변경 신청을 위하여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청회 개최 목적

○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0. 5. 1.(금) 14:00

○ 장　　소 : 포항시청 소회의실(5층)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규제자유특구 변경계획(안) 주요 내용

○ 특구 면적 확대 : (당초) 563,918.82 ㎡ → (변경) 742,470.82 ㎡

○ 실증사업 특구사업자 추가 : (당초) 6개 기업 및 기관 → (변경) 14개

4. 발 표 자 : 발표 신청자, 관련전문가 중 지명 또는 위촉

5.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0. 4. 20.(월) ~ 2020. 4. 29.(수) 18:00까지

○ 열람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202호 (전화: 054-880-2476)

6.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0. 4. 20.(월) ~ 2020. 4. 29.(수) 18:00까지

○ 제출양식 : 붙임 양식 참조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E-mail)로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 제출가능

- 주 소 : (38542)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 이메일 : care35@korea.kr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054-880-2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식- 전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의견서

제 출 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 의견			

「경북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후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변경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경상북도 공고 제2020-868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업 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일
㈜세기엔지니어링 (윤인애)	일반측량 (470-88-01152)	04-004671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2길 4(모전동)	2020.04.10.
㈜남경엔지니어링 (윤태열)	지적측량 (102-87-00253)	02-000351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33, 1층2층3층(동천동)	2020.04.10.

경상북도 공고 제2020-870호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19. 7. 4)으로 입소대상자, 비용의 청구 및 수납, 퇴소 등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간호센터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함에 따라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그 존치이유가 없어 동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폐지규칙안 : 붙임

3. 의견제출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 우)40060 경북 성주군 가천면 가천로33
- 연락처 : 054-933-7347, Fax 054-931-7238, 이메일 buog@korea.kr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존(폐지할) 조례 시행규칙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1. 19.] [경상북도규칙 제2856호, 2017. 1. 19., 일부개정]

경상북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①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소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소장은 입소환자의 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보건소 또는 병·의원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3조(입소대상자 등) ①조례 제4조에 의한 입소대상자는 병원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고 간호와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로 한다.

② 〈삭제 '12.1.5〉

1. 〈삭제 '12.1.5〉

2. 〈삭제 '12.1.5〉

3. 〈삭제'08.7.17〉

③〈삭제 '12.1.5〉

④ 건강진단결과 B형간염,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는 입소를 제한한다. 〈개정'07. 10. 11〉

제4조(입소절차)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입소대상자가 센터에 입소하고자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며,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07.10.11〉

1. 건강진단서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서류
3.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의 장기요양인정서(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한한다)〈신설'08.7.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소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확인하여 입소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확인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소의견서를 첨부하여 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센터소장은 입소신청자에 대한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시장·군수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12.1.5〉

제5조(입소기간) 입소기간은 입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환자의 상태 및 센터형편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07.10.11, '08.7.17〉

제6조(퇴소) ①센터소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기간 중에도 퇴소시킬 수 있다.

1.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개정 '07.10.11〉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이 가능하여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소한 경우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07.10.11〉
5.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소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소할 경우 제13조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은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일할계산으로 한다.

③ 이용료를 납부한 입소자가 제1항 각호중 제3호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퇴소할 경우에는 잔여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입소자 준수사항) 센터에 입소한 자는 센터에서 정한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종사자의 채용)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종사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08.7.17〉

② 〈삭제 '12.1.5〉

③ 시설종사자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채용하여야 한다.〈신설'07.10.11〉

1. 채용신체검사서

2. 자격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④ 시설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07.10.11〉

제9조(시설종사자의 근무기간) ①센터의 시설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로 한다. 〈개정'08.7.17, '12.1.5,'17.1.19〉

②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필요시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2.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한다.〈개정 '12.1.5〉

1. 조례의 변경·폐지 등으로 정원이 삭제된 때〈개정 '12.1.5〉

2. 센터의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한 때〈개정 '12.1.5〉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센터소장은 시설종사자가 수탁기관에 연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12.1.5〉

제10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제11조(근무시간 등)〈개정'08.7.17〉 조례 제7조제3항의 시설종사자는 센터 소장이 정

하는 근무시간과 근무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개정'08.7.17〉

제12조(자원봉사자) ①센터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급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징수)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07.10.11, '08.7.17〉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규정한 본인부담금 〈신설'08.7.17〉
2. 실비입소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의 70퍼센트로 한다.〈신설'08.7.17, '12.1.5〉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의한 입소시에는 3개월분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전 예치하여야 하며, 퇴소시에는 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08.7.17〉

부 칙 (2007. 10. 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5)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31.)

제2822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공 고 명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ㅁ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 공고 제2020-871호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수립에 대한 공청회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최목적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2.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 4. 29.(수) 14:00

○ 장소 : 미정(추후 공고)

3. 특구계획 개요

○ 명 칭 :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 목 적 : 현재 규제로 묶여 사용할 수 없는 헴프(Hemp)소재를 활용하여 CBD 소재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및 관련 전·후방산업 육성 추진

○ 위 치 :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대,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 예정면적 : 476,424㎡

○ 지정기간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4. 발 표 자 : 발표 신청자, 관련전문가 중 지명 또는 위촉

5.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0. 4. 20.(월) ~ 2020. 4. 28.(화) 18:00까지

○ 열람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202호 (전화: 054-880-2476)

6.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0. 4. 20.(월) ~ 2020. 4. 28.(화) 18:00까지

○ 제출양식 : 붙임 양식 참조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E-mail)로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 제출가능

- 주 소 : (38542)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 이메일 : care35@korea.kr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054-880-24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전면]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의견서

제 출 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 의견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후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872호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고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주요내용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특구계획 개요

○ **특 구 명 :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 **사업개요**

- 위 치 :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대,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 예정면적 : 476,424㎡
- 지정기간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 **주요내용**

- Hemp 재배
- CBD 제조 사업
- Hemp 관리 사업

2. 특구지정 필요성

○ 대마는 국민적 인식의 문제로 포괄적인 규제의 대상이나 마약류와 산업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유연한 시각으로 버려지는 농생명 소재 중심의 산업화가 필요함

○ 경상북도의 농생명 산업 육성계획과 안동 백신클러스터 등의 경험을 살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및 지원이 가능하고 연계 가능한 다양한 인프라가 존재함

○ 현재 규제로 묶여 사용할 수 없는 헴프(Hemp)소재를 활용하여 CBD 소재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식품, 화장품 등의 시제품을 생산해 해외시장 진출 타진

3. 특구지정 기대효과

○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 농업 도입을 통한 기존 농가를 활용하여 실버 세대 생산 인구 유지

○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규제에 막혀 버려지고 있는 헴프를 활용하여 제2의 홍삼, 제2의 녹차 성분과 같은 바이오소재 창출 가능

4. 특구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 : 경상북도지사

○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1항 4호에 따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로 경북 헴프 기반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

* 열람기간 중 확인 가능

5. 특구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방법

○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으로 추진할 계획임

○ Hemp 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총 45,00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조달 방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투자규모 및 재정조달방법은 추후 변경

6.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 기재 생략(필요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0. 4. 20.(월) ~ 2020. 5. 13.(수) 18:00까지

(09:00 ~ 18: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202호(전화: 054-880-2476)

8.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0. 4. 20.(월) ~ 2020. 5. 13.(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E-mail)로 제출하거나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 제출가능

- 주 소 : (38542)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 이메일 : care35@korea.kr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4차산업기반과(☏054-880-24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전면]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의견서

제 출 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 의견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 후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 (인)

◈◈◈

경주시 고시 제2020 - 6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일원의 안강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입체화 시설공사인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및 진입도로(대로3-검단2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13.

경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9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도로) 및 공간시설(광장)]

나. 명 칭 : 경주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입체화 시설공사[교통광장 및 진입도로(대로3-검단2호선)]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61,648㎡(법면 포함)

구 분	폭원 (m)	연장 (m)	결정면적 (㎡)	시행면적 (㎡)	결정일	비고
광장 (교통광장)	5.5~ 12.65	2,281	45,300	32,720	경북고시 제2014-301호 (2014.9.15)	법면면적: 26,755㎡
도로 (대로3-검단2)	27~30	80	2,173	2,173	경북고시 제2014-301호 (2014.9.15)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가. 주 소

-기정 : 경상북도 경주시 용담로 116번길 49-41, 2층(황성동, 세잔베르체상가)

-변경 :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나. 성 명

-기정 : ㈜우진 대표이사 최 정 임

-변경 : 경 주 시 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 인가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 인가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6. 사용(수용)할 토지(변경)

번호	읍	리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 계			28필지		396,772	61,648					
1	안강	검단	산93-3	도	4,345	1,415		국(건설 교통부)			
2	안강	검단	1357-2	도	1,422	820		국(건설 교통부)			
3	안강	검단	산90-5	임	365	365	포항시 남구 송도동 512-19	청송심씨 안효공파옥 현문중			기정
3	안강	검단	산90-5	임	365	36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변경
4	안강	검단	1361	도	880	745		국(건설 교통부)			
5	안강	검단	1360	답	178	178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6	안강	검단	산89	임	5,064	5,064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번호	읍	리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7	안강	검단	1370	대	432	432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27길6-17(매호동)	정명재			
8	안강	검단	1374	전	6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27길6-17(매호동)	정명재			
9	안강	검단	1525-1	도	24	24		국(건설부)			
10	안강	검단	1371	대	273	273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27길6-17(매호동)	정명재			
11	안강	검단	1372	전	633	63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12	안강	검단	1373	대	7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13	안강	검단	1384-1	답	2,883	1,984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36	윤광식			
14	안강	검단	1384	잡	131	69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36	윤광식			
15	안강	검단	산88	임	1983	1983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손종각			미등기
16	안강	검단	산84-5	임	26,119	175	대구 수성구 범어동 19-14	이종하			
							영일군 흥해읍 이인동 604	이종훈			
							대구 수성구 범어동 19-14	이종민			

번호	읍	리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17	안강	검단	산87	임	7,142	4,334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36	윤광식			
18	안강	검단	1393-2	도	8704	803		국(건설 교통부)			
19	안강	검단	1393-1	전	6,426	133	대구 수성구 범어동 19-14	이종하			
							영일군 흥해읍 이인동 604	이종훈			
							대구 수성구 범어동 19-14	이종민			
20	안강	검단	산87-2	임	5,019	545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36	윤광식			
21	안강	검단	산84-3	임	128,181	7,797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80길8,110동707호 (방촌동,우방강촌마을)	이종하	지상권 설정	한국 전력공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952번길 23-17	이종훈			
							경상북도 구미시 검성로103-40,501동1409호 (황상동, 금봉타운)	이종민			

번호	읍	리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22	안강	검단	산89-2	임	3,400	3,4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1-805	정문재			
23	안강	검단	산91	임	44,430	2,459	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85번길15-1(성건동)	강현중	지상권 설정	한국 전력공사	
24	안강	검단	1362	도	60	60		국(건설 교통부)			
25	안강	검단	산90-1	임	23,569	10,862	포항시 남구 송도동 512-19	청송심씨안 효공파옥현 문중			기정
25	안강	검단	산90-1	임	23,569	10,862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68	청송심씨안 효공파옥현 문중	지상권 설정	한국 전력공사	변경
26	안강	검단	산93-1	임	247	150	경주시 동방동 639	최병권			
27	안강	검단	산93	임	63,381	320	울산시 동구 전하동 550-6 3-202호	김효원			기정
							울산 남구 삼산동 1461-3 삼신현대아파트 101-901	박희완			
							울산시 동구 서부동 248-4 서부맨션 1-303호	안상철			

번호	읍	리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울산 남구 달동 1352-5 현대아파트 104-602	유상진			
							울주군 농소면 신천리 388	이곤우	압류	울산광역시 남구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35	최경환			
27	안강	검단	산93	임	63,381	320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253, 105동 605호 (삼산동, 삼산현대아파트)	김효원	지상권 설정	한국 전력공사	변경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86번길 43, 201동 603호 (달동, 달동힐스테이트)	박희완			
							울산광역시 남구 강남로 348, 103동 1406호 (삼산동, 삼산현대아파트)	안상철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83, 104동 602호 (달동, 현대아파트)	유상진			

번호	읍	리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검단길 226-17	최경환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 494	한미애	압류	울산광역시 남구	
28	안강	검단	산94-3	도	61,468	16,612		국(건설 교통부)			

7.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주시청 기업지원과(☎054-779-6260) 및 사업시행자가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안동시 고시 제2020 - 64호

안동 도시계획시설(옥송상록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안동시 옥동 산7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옥송상록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안 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동시 옥동 산7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안동 도시계획시설(옥송상록공원) 사업

· 명 칭 : 옥송상록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사업규모 : 209,307㎡ [공원시설 160,924㎡(76.9%) / 비공원시설 48,383㎡ (2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공동시행)

· 경상북도 안동시장 권영세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안동시청)

· 주식회사 호반건설 대표이사 송종민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37

5.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영양군 고시 제2020-24호

영양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전곡리 406-3번지 일원 영양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20. 4. 13.

영 양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영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영양읍 전곡리 406-3번지 일원	77,880	증) 3,997	81,877	영양군고시 제2002-17호 (2002.10.25.)	-

나.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시설면적 변경 ◦ 기정77,880㎡ → 변경81,877㎡ (증 : 3,997㎡)	◦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형사정으로 인한 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및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 (경미한 변경)

3. 영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영양군 지역경제과(054-680-6341) 및 환경보전과 (054-680-653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영덕군 고시 제2020-34호

영덕 제2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2번지 일원 영덕 제2농공단지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영 덕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영덕 제2농공단지

※ 금회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식회사 팜그리드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중앙길 88-1, 2층

※ 금회 사업에 한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신재생에너지 유치를 목적으로 유치업종을 추가하여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금회 사업에 한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2번지 일원

나. 면 적 :326,749.4㎡

※ 금회 사업에 한함

- 위 치 :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2번지, 1160번지, 1161번지, 1162번지, 1153번지, 1154번지, 1155번지(영덕 제2농공단지 내)

- 면 적 : 51,652.6㎡

5. 사업시행기간

○ 시행기간 : 2020년 3월 ~ 실시계획 승인 시

※ 농공단지 : 공사완료(영덕군 고시 제2019-126호(2020. 1. 2.))되었으며 금회 사업은 주요유치업종 변경 및 배치계획 변경임

6. 주요 유치업종

가. 주요 유치업종

○ 준공 시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금회 업종 추가 시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소분류 상 351 전기업)

나.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준공시	금 회	준공시	금 회	
계		195,211.0	195,211.0	100.0	10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41,836.7	28,944.3	21.4	14.8	감 12,89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22,609.0	22,609.0	11.6	11.6	
전기장비 제조업	C28	43,859.5	43,859.5	22.5	2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62,407.4	48,145.6	32.0	24.7	감 14,261.8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24,498.4	14,261.8	12.5	7.3	감 10,236.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소분류 상 351 전기업)	D35	-	37,390.8		19.1	증 37,390.8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획관리지역	326,749.4	-	326,749.4	100.0	

2) 세부토지이용계획(농공단지 개발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26,749.4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95,211.0	59.7	
지 원 시 설 용 지	3,382.5	1.0	
공 공 시 설 용 지	128,155.9	39.3	
폐수처리시설	4,629.5	1.4	
수도공급설비	146.6	0.1	
주 차 장	2,399.8	0.7	
저 류 지	4,916.2	1.5	
도 로	43,497.9	13.3	
공 원	2,470.2	0.8	
녹 지	70,095.7	21.5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9	3,031	43,497.9	1	224	2,431.1	5	2,019	31,948.4	3	788	9,118.4
중로	7	2,718	40,530.6	-	-	-	5	2,019	31,948.4	2	699	8,582.2
소로	2	313	2,967.3	1	224	2,431.1	-	-	-	1	89	536.2

2) 주차장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2,399.8	-	2,399.8		
기정	1	노외 주차장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4번지	2,399.8	-	2,399.8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3) 공원·녹지계획

가) 공 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2,470.2	-	2,470.2		
기정	1	공원	소공원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5번지	2,470.2	-	2,470.2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나) 녹 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70,095.7	-	70,095.7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39번지 일원	68,771.7	-	68,771.7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기정	2	녹지	완충 녹지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80번지	1,324	-	1,324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4) 공급처리시설

가) 시설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46.6	-	146.6		
기정	1	수도 공급설비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49번지	146.6	-	146.6	영덕군고시 제2019-17호 (2019.02.14)	가압장

나) 용수량 산정

구 분	용수 수요량(㎥/일)		비 고
	준공시	금회	
계	1,093.6	1,058.0	
공업용수	979.9	955.4	
생활용수	133.7	102.6	

※ 대상지내의 생활용수는 관거(D=100㎜)를 통해, 공업용수는 관거(D=150㎜)를 계획하여 공급

※ 용수배수는 단지외 배수지에서 자연유하로 공급

※ 최소동수압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하여 1.5kg/㎠이며 이를 기준으로 함

※ 최대동수압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4.0kg/㎠ 이내로 함

5) 오·폐수처리계획

가) 시설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4,629.5	-	4,629.5		
기정	1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81번지	4,629.5	-	4,629.5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나) 오·폐수량 산정

구 분	오·폐수 발생량(㎥/일)		비 고
	준공시	금회	
계	637.6	564.8	
공장폐수	541.9	478.4	
생활오수	95.7	86.4	

※ 오·폐수는 오수관로를 통해 단지내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계획하며, 처리후 오십천으로 방류

※ 관 종 : P E 관 - D300㎜

6) 폐기물처리계획

가) 폐기물 총발생량

구 분	폐기물 발생량(톤/일)		비 고
	준공시	금회	
계	28.623	24.888	
생활폐기물	1.220	1.451	
사업장폐기물	27.403	23.437	
가연성	3.279	3.553	
불연성	4.903	5.520	
지정폐기물	19.221	14.364	

※ 생활폐기물은 영덕군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소각 및 매립처리토록 하며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임

※ 사업지구에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대상인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대상인 불연성 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임

7) 저류시설계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4,916.2	-	4,916.2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83번지	4,916.2	-	4,916.2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8) 전력공급계획

가) 농공단지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 영덕지점과 협의결과에 따라 인근의 영덕변전소에서 공급 할 계획임

나) 변압기 설비용량 : 14,589.3kVA

9) 통신공급계획

가) 통신 수요량 산정

구 분	규모		회선기준	통신수요	
	준공시	금회		준공시	금회
계	-	-	-	111	100
산업용지 종사자	971	867	1회선/10인	98	87
지원시설용지	3,382.5	3,382.5	0.03회선/10㎡	11	11
공중전화	1,006	902	1회선/500인	2	2

※ 본 농공단지에 대한 통신공급은 영덕전화국 및 통신사업자가 공급

10) 에너지공급계획

가) LNG공급과 관련하여 영남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

8.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 지구 · 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획관리지역	326,749.4	-	326,749.4	100.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1	영덕 제2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4번지 일원	326,749.4	-	326,749.4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1)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9	3,031	43,497.9	1	224	2,431.1	5	2,019	31,948.4	3	788	9,118.4
중로	7	2,718	40,530.6	-	-	-	5	2,019	31,948.4	2	699	8,582.2
소로	2	313	2,967.3	1	224	2,431.1	-	-	-	1	89	536.2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9개 노선				3,031						
소계		7개 노선				2,718						
기정	중로	2	1	18	집산도로	316	매정리 1157	매정리 1157 (중로2-3)	일반도로	-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486	매정리 1156 (중로2-1)	매정리 1156 (중로2-3)	일반도로	-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265	매정리 1156 (중로2-1)	매정리 1156 (중로2-4)	일반도로	공원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393	매정리 1158 (중로2-2)	매정리 1158 (중로2-3)	일반도로	-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559	매정리 1156 (중로2-3)	매정리 1156 (중로2-3)	일반도로	주차장, 지원시설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555	매정리 1156 (중로2-4)	매정리 1156 (중로2-5)	일반도로	-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144	매정리 1159 (중로2-5)	매정리 1159 (소로1-1)	일반도로	폐수처리시설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계		2개 노선				313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24	매정리 1159 (중로2-5)	매정리 1159 (중로3-2)	일반도로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89	매정리 1182 (중로3-1)	매정리 1182	일반도로	폐수처리시설, 저류지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2,399.8	-	2,399.8		
기정	1	노외 주차장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4번지	2,399.8	-	2,399.8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2) 공간시설

가) 공 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2,470.2	-	2,470.2		
기정	1	공원	소공원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5번지	2,470.2	-	2,470.2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나) 녹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70,095.7	-	70,095.7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39번지 일원	68,771.7	-	68,771.7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기정	2	녹지	완충 녹지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80번지	1,324	-	1,324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1)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146.6	-	146.6		
기정	1	수도 공급설비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49번지	146.6	-	146.6	영덕군고시 제2019-17호 (2019.02.14)	가압장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4,629.5	-	4,629.5		
기정	1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81번지	4,629.5	-	4,629.5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5) 방재시설

가) 유수지

(1) 유수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4,916.2	-	4,916.2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83번지	4,916.2	-	4,916.2	영덕군고시 제2012-38호 (2012.05.21)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1-1	1	12,892.4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2	12,892.4	
2-1	2	24,498.4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0	6,690.7	
2-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1	8,158.4	
2-3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2	9,649.3	
3-1	3	28,944.3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0	6,243.0	
3-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1	8,733.4	
3-3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2	13,967.9	
4-1	4	14,261.8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3	5,782.7	
4-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4	5,683.2	
4-3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5	2,795.9	
5-1	5	33,988.9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3	11,450.5	
5-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4	11,525.8	
5-3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5	11,012.6	
6-1	6	29,842.5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6	12,290.1	
6-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7	14,169.9	
6-3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3	3,382.5	
7-1	7	14,156.7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6	5,041.6	
7-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7	9,115.1	
8-1	8	22,609.0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8	11,240.2	
8-2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69	11,368.8	
9-1	9	13,256.9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8	13,256.9	
10-1	10	4,142.6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9	4,142.6	

※ 산업시설용지는 1,000㎡ 이상 분할 및 합필 가능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3">구 분</th><th>계 획 내 용</th><th></th></tr>
<tr><td rowspan="6">1-1~
6-2,
7-1~
10-1</td><td rowspan="6">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4번지
일원</td><td rowspan="4">용도
(B)</td><td rowspan="2">허 용
용 도</td><td>기정</td><td>•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부대시설 포함)</td><td rowspan="6">공장
용지</td></tr>
<tr><td>변경</td><td>• 농공단지 계획 상 주요유치업종에 해당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부대시설 포함)
• 농공단지 계획 상 주요유치업종에 해당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부대시설 포함)</td></tr>
<tr><td rowspan="2">불 허
용 도</td><td>기정</td><td>• 허용용도 이외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공장</td></tr>
<tr><td>변경</td><td>• 허용용도 이외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입주예정업체 및 사업장</td></tr>
<tr><td colspan="3">건폐율</td><td>• 70% 이하</td></tr>
<tr><td colspan="3">용적률</td><td>• 150% 이하</td></tr>
<tr><td colspan="3">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td><td>-</td></tr>
<tr><td colspan="3">색 채</td><td>• 외벽의 색채
주조색 |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의 밝은색 계통 권장
보조색 |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 | · 제한 없음
- 친환경 도료 사용 권장</td></tr>
</table>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6-3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73번지	용도(A)	허 용 용 도	•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	지원시설용지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건축선		-	
		색 채		• 외벽의 색채	
			주조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의 밝은색 계통 권장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	· 제한 없음	
				- 친환경 도료 사용 권장	

9. 농공단지 실시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0.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영덕군 일자리경제과(☎054-730-62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

안동시 공고 제2020-8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5)]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5)]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동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람 및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안 동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규모	사 업 구 간		도시계획 지정승인근거
		시 점	종 점	
평화소로(3-25) 개설공사	도로개설 L=60.0m B=6.0m	평화동 165-13	평화동 164-64	안동시 고시 제2018-19호 (2018.02.12.)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사업의 명칭 : 평화소로(3-25)개설공사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20년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1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 : 안동시장

6. 관계도서 및 기타 : 게재 및 공람장소 비치

7.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054-840-5403)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소로(3-25)]**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동	당초	편입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종류	성명	
1	평화	164-12	164-64	대	87	87	공	안동시			
2	평화	164-18	164-65	대	59	59	공	안동시			
3	평화	164-21	164-66	대	6	6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5-8(평화동)	박○조 외 5명			
4	평화	164-22	164-67	대	7	7	공	안동시			
5	평화	164-58	164-68	대	22	22	공	안동시			
6	평화	165-3	165-13	대	84	84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5 아파트 331동 304호	민○태			
7	평화	165-9	165-14	대	84	84	공	안동시			
총 계					349	349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번호	소 재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시	동	지 번					주 소	성명	
1	안동	평화	164-21	주택1	벽돌조기와 및 판넬	67.44	㎡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5-8(평화동)	박○조 외 5명	
				가작	철파이프조판넬	16.8	㎡			
				주택2	벽돌조판넬	12.16	㎡			
				창고	블록조스레트	4.16	㎡			
				바닥	콘크리트	15	㎡			
				화단		1	식			
				담장	조립식	12.96	㎡			
2	안동	평화	165-3	주택1	벽돌조기와	38.62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5 아파트 331동 304호	민○태	
				주택2	벽돌조슬라브 계단포함	25.92	㎡			
				바닥	보도블록	21	㎡			
				담장	블록	32.4	㎡			
				대문	철제, 문주포함	1	식			

상주시 공고 제2020 - 4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134호) 실시계획 열람공고

1.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134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상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 4. 13.

상 주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 2-134호)

○ 명 칭 : 낙양동 명지2차아파트 옆 소로(2-134) 개설공사

나.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199-40번지 외 12필지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상주시 상산로 223번지

○ 성 명 : 상 주 시 장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3필지, 1,349㎡

○ 규 모 : 도로확포장 L = 146m, B = 8m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바. 열 람 기 간 : 2020. 04. 13. ~ 2020. 04. 28.

사. 열 람 장 소 : 상주시청 도시과 (☏537-7582)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붙임 참조

자. 관 계 도 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 편입용지조서1 】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및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계	도시계획시설	성 명	주 소	
합계			13필지		15,016	1,349	1,349			
1	상주	낙양동	199-40	대	1,862	5	5	낙양동명지아파트 2차		
2	상주	낙양동	199-39	대	3,774	12	12	낙양동명지아파트 2차		
3	상주	낙양동	199-46	구	125	72	72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4	상주	낙양동	199-38	도	1,906	198	198	상주시		
5	상주	낙양동	200	답	397	151	151	박면*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	
6	상주	낙양동	421-24	구	2,468	126	126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7	상주	낙양동	153	답	529	147	147	성백*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	
8	상주	낙양동	424-3	도	187	63	63	국토교통부		
9	상주	낙양동	146-9	대	1,806	67	67	김수*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3길 ***-**	
10	상주	낙양동	146-113	답	339	300	300	김수*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3길 ***-**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및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계	도시계획시설	성 명	주 소	
11	상주	낙양동	146-28	답	552	204	204	최지*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	
12	상주	낙양동	146-120	답	43	2	2	최지*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	
13	상주	낙양동	146-56	답	1,028	2	2	윤동*	경상북도 상주시 낙양동 ***-*	

상주시 공고 제2020 - 41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3호) 실시계획 열람공고

1.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3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상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 4. 13.

상 주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 3-3호)

○ 명 칭 : 주왕산삼계탕~경원식당 중로(3-3) 개설공사

나.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동 298-21번지 외 32필지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상주시 상산로 223번지

○ 성 명 : 상 주 시 장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33필지, 2,809㎡

○ 규 모 : 도로확포장 L = 191m, B = 12m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바. 열 람 기 간 : 2020. 04. 13. ~ 2020. 04. 28.

사. 열 람 장 소 : 상주시청 도시과 (☏537-7582)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붙임 참조

자. 관 계 도 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 편입용지조서 】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및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계	도시계획시설	성 명	주 소	
합계			33필지		53,678	2,809	2,809			
1	상주	만산동	298-21	답	1	1	1	상주시		
2	상주	만산동	299-11	전	79	79	79	상주시		
3	상주	만산동	299-10	답	117	117	117	상주시		
4	상주	만산동	295-1	전	644	644	644	상주시		
5	상주	만산동	294-1	전	487	487	487	상주시		
6	상주	만산동	291-3	전	153	153	153	박병*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	
7	상주	만산동	738-13	구	114	114	114	농림축산식품부		
8	상주	만산동	194-5	답	70	70	70	상주시		
9	상주	만산동	194-6	구	120	120	120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10	상주	만산동	195-3	답	10	10	10	박병*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	
11	상주	만산동	196-4	답	143	143	143	상주시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및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계	도시계획시설	성 명	주 소	
12	상주	만산동	205-6	답	467	467	467	이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7동****호	
13	상주	만산동	209-4	답	35	35	35	박병*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	
14	상주	만산동	299-6	전	14	1	1	고영*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	
15	상주	만산동	299-2	대	212	2	2	고영*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	
16	상주	만산동	299-4	답	45	1	1	고영*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	
17	상주	만산동	295	전	1,212	66	66	신상*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들마길 **-**	
18	상주	만산동	295-2	전	2,008	43	43	신상*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들마길 **-**	
19	상주	만산동	294	전	246	21	21	안정*	상주시 남성로 78-* (남성동)	
20	상주	만산동	291-2	전	104	13	13	박병*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	
21	상주	만산동	738-14	구	2,016	25	25	농림축산식품부		
22	상주	만산동	291-4	전	645	2	2	박병*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	
23	상주	만산동	190	답	1,131	1	1	이광* 외 1인	상주시 남성3길 35 ****호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및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계	도시계획시설	성 명	주 소	
24	상주	만산동	194-1	답	3,745	12	12	김도*	상주시 만산4길 22-*	
25	상주	만산동	738-5	구	32,495	7	7	농림축산식품부		
26	상주	만산동	194-7	구	11	5	5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27	상주	만산동	195-2	답	30	8	8	박병*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	
28	상주	만산동	194-2	구	1,496	5	5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29	상주	만산동	196-5	답	367	13	13	노명*	상주시 사벌면 용마로 ***	
30	상주	만산동	196-1	답	1,576	18	18	노명*	상주시 사벌면 용마로 ***	
31	상주	만산동	205-7	답	519	47	47	이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호	
32	상주	만산동	205	답	1,939	77	77	이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호	
33	상주	만산동	209	답	1,413	2	2	박병*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	

상주시 공고 제2020 - 41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96호) 실시계획 열람공고

1.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96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상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 4. 13.

상 주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 3-96호)

○ 명 칭 : 무양동 은하수원룸 옆 소로(3-96) 개설공사

나.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1-417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상주시 상산로 223번지

○ 성 명 : 상 주 시 장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5필지, 303㎡

○ 규 모 : 도로확포장 L = 50.5m, B = 6m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바. 열 람 기 간 : 2020. 04. 13. ~ 2020. 04. 28.

사. 열 람 장 소 : 상주시청 도시과 (☏537-7582)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붙임 참조

자. 관 계 도 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 편입용지조서1 】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및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계	도시계획시설	성 명	주 소	
합 계			5필지		1,602	303	303			
1	상주	무양동	1-417	답	102	5	5	상주시		
2	상주	무양동	1-94	답	836	2	2	정충*	경상북도 상주시 봉양2길 ** (무양동)	
3	상주	무양동	1-413	답	401	33	33	상주시		
4	상주	무양동	1-455	답	256	256	256	정재*	대구시 북구 동북로 163 산격대우아파트109-***	
5	상주	무양동	1-453	답	7	7	7	정옥* 외 1인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147 106-****(신봉동, 동아아파트)	

상주시 공고 제2020 - 4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4호) 실시계획 열람공고

1.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4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도서는 상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 4. 13.

상 주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 3-4호)

○ 명 칭 : 구산림조합-은성빌라 소로(3-4) 개설공사

나.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119-11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상주시 상산로 223번지

○ 성 명 : 상 주 시 장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28필지, 702㎡

○ 규 모 : 도로확포장 L =117m, B = 6m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바. 열 람 기 간 : 2020. 04. 13. ~ 2020. 04. 28.

사. 열 람 장 소 : 상주시청 도시과 (☏537-7582)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붙임 참조

자. 관 계 도 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 편입용지조서 】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및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계	도시계획시설	성 명	주 소	
합 계			28필지		3,626	702	702			
1	상주	무양동	119-11	대	13	3	3	상주시		
2	상주	무양동	121-3	대	4	4	4	엄충*	상주시 무양안길 **	
3	상주	무양동	80-1	도	40	1	1	국		
4	상주	무양동	119-5	도	23	1	1	황복*	상주시 무양동 11*	
5	상주	무양동	76-1	대	20	13	13	최창*	상주시 무양동 7*	
6	상주	무양동	121-2	도	33	31	31	이종*	상주시 무양동 12*	
7	상주	무양동	80-3	도	622	29	29	상주시		
8	상주	무양동	122-2	도	20	18	18	박주*	상주시 무양동 **	
9	상주	무양동	268-52	도	2,145	262	262	국		
10	상주	무양동	75-1	대	25	25	25	박명*	상주시 무양동 **	
11	상주	무양동	123-2	도	20	20	20	박성*	대구시 동구 불로동 539-*	
12	상주	무양동	71-3	대	9	7	7	임덕* 외 1인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85번길 61101-***	
13	상주	무양동	123-4	대	1	1	1	오정* 외 1인	상주시 무양동 12*	
14	상주	무양동	124-2	도	20	20	20	조원*	상주시 무양안길**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및 관계인		비고
	시	동	지번			계	도시계획시설	성 명	주 소	
15	상주	무양동	124-3	대	15	15	15	조원*	상주시 무양안길**	
16	상주	무양동	125-3	대	32	26	26	천주*	상주시 무양동 12*	
17	상주	무양동	70-2	대	268	3	3	임덕* 외 1인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85번길 61101-****	
18	상주	무양동	125-2	도	20	14	14	천인*	상주시 무양동 12*	
19	상주	무양동	70-1	도	7	7	7	임재*	상주시 무양동 7*	
20	상주	무양동	59-3	도	10	8	8	손오*	서울시 종로구 충신4길31-**	
21	상주	무양동	164-37	대	20	20	20	박서*	상주시 무양안길**	
22	상주	무양동	164-36	대	14	14	14	박서*	상주시 무양안길**	
23	상주	무양동	164-4	도	79	79	79	김정*	김천시 황금동 76-*	
24	상주	무양동	164-35	도	33	33	33	김현*	상주시 무양동 16*	
25	상주	무양동	59-2	도	7	1	1	손오*	서울시 종로구 충신동1-29*	
26	상주	무양동	164-34	대	8	8	8	상주시		
27	상주	무양동	165-1	도	96	35	35	윤주*	상주시 무양동 16*	
28	상주	무양동	58-1	도	22	4	4	안일*	상주시 무양동 58-*	

경산시 공고 제2020 - 588호

경산도시계획시설(소로1-8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경산도시계획시설(소로1-8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사전 열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경 산 시 장

1. 사업의 위치 : 경산시 중방동 868-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도로

○ 명 칭 : 도로(소로1-86호선)

3. 사업규모

○ 소로1-86호선 : L=65.0m, B=10.0m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년 6월 30일까지

5. 사업시행자

○ 주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 성명 : 경산시장

6. 실시계획인가 사유

○ 경산시청 별관 옆 도시계획도로(소로1-86) 확장공사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포장하여 지역간 균형개발과 주민숙원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붙임

8. 열람 및 의견청취 장소 : 경산시청 도시과, 회계과

9.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0. 4. 13. ~ 2020. 4. 27.(도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810-5520), 회계과(☎810-5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자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합 계				89,637.2	678						
1	경산시 중방동	871	도	88,089.5	427	경산시					
2	〃	869 -13	대	928.6	6	경산시					
3	〃	868 -4	대	94.9	35	경산시					
4	〃	868 -5	대	115.6	44	곽경욱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공원로 22, 107동 1505호 (시지동,노변동서우방타운)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근저당	
5	〃	868 -9	대	115.6	45	경산시					
6	〃	868 -7	대	303.0	121	김영규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319-47				

의성군 공고 제2020 - 661호

의성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산1-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본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의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산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공원) 사업

나. 명 칭 : 의성읍 둘레길 관광자원화 사업

3. 사업의 규모

가. 실시계획인가 면적 : 1,16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의성군수

나. 주 소 :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열람 및 의견청취 장소 : 의성군청 지역재생과

8.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0. 4. 13. ~ 2020. 5. 6.까지(14일 이상, 국·공휴일 제외)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지역재생과(☎054-830-6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위 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읍	리						
계	5필지				63,421	1,164		
1	의성	원당	산1-1	임	52,719	494	의성군	
2	의성	원당	산12	임	7,180	198	경상북도 (교육감)	
3	의성	원당	산12-1	도	1,653	53	건설부	
4	의성	원당	산12-3	임	754	187	의성군	
5	의성	팔성	산1-3	임	1,115	232	의성군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33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0. 4. 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형산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서라벌도시가스주식회사 주소 : 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 183(용강동)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20-1번지 일원 면적 : 419㎡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도시가스배관 매설 시설개요 : 가스관로(400A)
점용 기간	당초: 2015년 4월 11일부터 2020년 4월 10일까지 **변경: 2020년 4월 11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134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0. 4. 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형산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주식회사 포스코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45-2번지 일원 면적 : 21.7㎡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도시가스배관 매설 시설개요 : 가스관로 L=31m, D=450㎜
점용 기간	당초: 2010년 2월 5일부터 2015년 2월 4일까지 **변경: 2015년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 - 10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실시계획 정정 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22호(2019. 7. 22.)로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고시문 내용 중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에 정정요인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정정사유 : 분할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의 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

(기정)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첨부

(변경) 개발계획 변경(4차) 정정 고시 첨부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변경없음

7.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변경없음

8. 공원조성계획 결정 사항 : 변경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변경없음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0－3호

2020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정정공고

도보 제6420호(2020. 3. 26)에 게재된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0-2호(2020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공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13일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연번	대 상 자		정정사항	비 고
	소속 및 직위	성 명		
1	안동시 의회의원	김호석	재산공개내역 (유가증권 오류)	도보 제6420호(2020.3.26.) 377쪽~380쪽
2	구미시 의회의원	박교상	재산공개내역 (유가증권 오류)	도보 제6420호(2020.3.26.) 435쪽, 436쪽
3	청송군 의회의원	정미진	재산공개내역 (예금 오류)	도보 제6420호(2020.3.26.) 746쪽~750쪽

소속	경상북도 안동시		직위	의원		성명	김호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 가격)	감소액 (실거래 가격)		
▶ 토지(소계)			336,329	33,500	39,098	330,731	
본인	잡종지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110번지 414.00㎡	218,923	6,086	0	225,009	
본인	도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500-153번지 779.00㎡ 중 259.00㎡	11,111	595	0	11,706	
본인	대지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계상리 158번지 0.00㎡ 중 0.00㎡ (총면적 982.00㎡ 감소, 지분면적 491.00㎡ 감소)	18,019	0	18,019 (18,250)	0	
본인	전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계상리 95번지 2,318.00㎡	32,915	3,709	0	36,624	
본인	전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계상리 95-1번지 717.00㎡	10,181	1,147	0	11,328	
본인	임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 53-3번지 3,936.00㎡ 중 330.58㎡	8,528	0	65	8,463	

본인	대지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078-48번지 0.00㎡ (96.00㎡ 감소)	21,014	0	21,014	0	토지합병에 따른 가액감소
본인	대지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078-41번지 136.00㎡ (96.00㎡ 증가)	9,020	21,811	0	30,831	토지합병에 따른 가액증가
배우자	대지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12-29번지 11.00㎡	6,618	152	0	6,770	
▶ 건물(소계)			1,823,804	0	1,300	1,822,504	
본인	상가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대지 1,953.00㎡ 건물 1,356.31㎡	1,364,494	0	0	1,364,494	
본인	창고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대지 284.00㎡ 건물 150.00㎡	40,787	0	0	40,787	
본인	창고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대지 310.00㎡ 건물 189.00㎡	45,254	0	0	45,254	
본인	단독주택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대지 133.00㎡ 건물 134.74㎡	60,600	0	1,300	59,300	
본인	사무실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에이스아울렛 대지 63.47㎡ 건물 61.20㎡	52,115	0	0	52,115	
배우자	상가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대지 375.00㎡ 건물 264.99㎡	260,554	0	0	260,554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26,862	0	3,267	23,595	
배우자	자동차	2008년식 포터2 배기량(2,500cc)	1,797	0	258	1,539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포터2 배기량(2,497cc)	10,080	0	1,532	8,548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포터2윙바디 배기량(2,497cc)	14,076	0	1,339	12,737	
배우자	자동차	2005년식 뉴아반떼XD 배기량(1,599cc)	909	0	138	771	
▶ 예금(소계)			554,331	160,926	50,072	665,185	
본인		(주)KB손해보험 9,792(2,064 증가), DB손해보험(주) 3,000(2,200 증가), 교보생명보험 76,467(5,364 증가), 국민은행 83, 농협생명보험 45,924(2,400 증가), 농협은행 31,508(6,486 증가), 농협중앙회 418(364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2,918(975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35(135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1,303(1,303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5,907, 산림조합중앙회 5,756(893 증가), 삼성생명보험 48,682(3,545 감소), 삼성증권 13(1 증가), 새마을금고 20,351(7,457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33,298(5,072 증가), 유안타증권 20(1 증가),	291,244	43,845	8,536	326,553	소득 저축에 따른 예금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7,485(475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33,493(3,664 증가)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0, 국민은행 1,002, 농협생명보험 57,264(19,415 감소), 농협손해보험 2,670(360 증가), 농협은행 3,281(1,674 증가), 농협중앙회 62,677(55,626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420(420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50(18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11, 삼성생명보험 46,992(4,080 증가), 새마을금고 24,351(11,680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27,084(6,329 증가), 에이비엘생명보험 18,670(1,341 증가), 우리은행 13,291(2,979 증가), 유안타증권 0(5,986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1,613(1,21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20,684(5,484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8,870(4,440 증가)	238,700	104,031	33,791	308,940	
장남		국민은행 138(508 감소), 농협은행 6,400(600 증가), 농협중앙회 0(702 감소), 새마을금고 830(300 증가), 신한은행 4, 우체국 3,301(771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0(10 감소)	10,222	2,171	1,720	10,673	

장녀		(주)KEB하나은행 0(85 감소), 국민은행 2,069(2,028 증가), 농협은행 6,073(273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3(3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100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7,549(1,969 증가), 신한은행 0(1 감소), 우리은행 0(1 감소), 우체국 3,325(768 증가)	14,165	10,879	6,025	19,019	소득 저축에 따른 예금 증가
▶ 유가증권(소계)			8,450	6,638	5,746	9,342	
본인	상장주식	대유에이텍 0주(4,263주 감소), 경농 34주(34주 증가), 삼보오토 1,250주, 자융/경농 113주(113주 증가), 자융/아난티 176주(176주 증가), 아난티 144주(144주 증가), 노터스 80주(80주 증가)	5,820	6,638	5,592	6,866	주식 추가 매매 및 주가변동
배우자	상장주식	SK증권 2,110주, 시노펙스 436주	2,630	0	154	2,476	
▶ 채무(소계)			2,195,928	37,794	102,424	2,131,298	
본인	금융기관 채무	KB캐피탈 0(116 감소), 농협은행 24,000(8,746 증가), 농협중앙회 70,000, 미래에셋대우(주) 4,613(4,613 증가), 삼성생명보험 17,640(3,870 감소), 새마을금고 1,601,017(41,528 감소), 흥국화재해상보험(주) 8,000(5,000 증가)	1,752,425	18,359	45,514	1,725,270	대출 및 소득으로 채무 상환

배우자	금융기관 채무	국민은행 6,844(3,754 감소), 농협은행 22,320(31,780 감소), 농협중앙회 10,000, 삼성생명보험 5,000, 새마을금고 300,000, 현대캐피탈 8,929(4,876 감소)	393,503	16,500	56,910	353,093	대출 및 소득으로 채무 상환
배우자	건물임대 채무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임대보증금	50,000	0	0	50,000	
장녀	금융기관 채무	한국카카오은행(주) 2,935(2,935 증가)	0	2,935	0	2,935	소득으로 채무 상환
총 계			**553,848**	**163,270**	**-2,941**	**720,059**	**증감액: 166,211천원 (가액변동: 28,706천원)**

소속	경상북도 구미시		직위	의원		성명	박교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 가격)	감소액 (실거래 가격)		
▶ 토지(소계)			0	3,240	0	3,240	
차남	전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240번지 1,355.00㎡ 중 677.50㎡ (총면적 1,355.00㎡ 증가, 지분면적 677.50㎡ 증가)	-	1,443	0	1,443	신규취득(증여)
차남	전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대리 241번지 1,563.00㎡ 중 781.50㎡ (총면적 1,563.00㎡ 증가, 지분면적 781.50㎡ 증가)	-	1,797	0	1,797	신규취득(증여)
▶ 건물(소계)			299,000	8,000	0	307,000	
모	단독주택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 대지 426.80㎡ 건물 185.22㎡	299,000	8,000	0	307,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22,500	0	2,250	20,250	
차남	자동차	2017년식 Peugeot3081 1.6 Blue-HDi 배기량(1,560cc)	17,500	0	1,750	15,750	

장남	자동차	2008년식 MINICooper 배기량(1,598cc)	5,000	0	500	4,500	
▶ 예금(소계)			63,974	31,762	41,119	54,617	
본인		DB손해보험(주) 1,748(912 증가), NH투자증권 60, 농협중앙회 2,623(74 증가), 새마을금고 1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74(5 감소), 중소기업은행 53(141 감소)	4,028	986	146	4,868	급여저축 및 이자, 생활비 지출
모		(주)KEB하나은행 11, 농협중앙회 9,832(2,558 증가)	7,285	2,558	0	9,843	
차남		DB손해보험(주) 11,641(1,875 증가), 농협중앙회 2,635(1,94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50(31,801 감소), 신한금융투자(주) 0(1 감소), 신한은행 15,098(7,694 증가), 중소기업은행 10, 한국카카오은행(주) 933(933 증가)	50,627	19,748	39,108	31,267	급여저축 및 이자, 생활비 지출
장남		(주)KEB하나은행 5,905(5,758 증가), DB손해보험(주) 0(1,865 감소), 국민은행 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6,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공제사업부 2,691(2,691 증가), 우리은행 1, 한국카카오은행(주) 21(21 증가)	2,034	8,470	1,865	8,639	
▶ 유가증권(소계)			648	7	467	188	

본인	상장주식	SG세계물산 40주, 풍산 5주, 풍산홀딩스 1주	201	7	20	188	가액변동, 일부매각
차남	상장주식	비상교육 0주(72주 감소)	447	0	447	0	
▶ 채무(소계)			20,629	220,000	10,176	230,453	
차남	금융기관 채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20,000(220,000 증가)	0	220,000	0	220,000	신규대출(대출승계)
장남	금융기관 채무	(주)KEB하나은행 0(1,216 감소), 하나카드 10,453(8,960 감소)	20,629	0	10,176	10,453	일부상환
▶ 회원권(소계)			20,000	0	0	20,000	
본인	콘도 미니엄	현대수콘도	20,000	-	-	20,000	
총 계			385,493	-176,991	33,660	174,842	증감액: -210,651천원 (가액변동: 5,290천원)

소속	경상북도 청송군		직위	의원		성명	정미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 가격)	감소액 (실거래가 격)		
▶ 토지(소계)			388,064	10,243	26,028	372,279	
본인	전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부일리 963번지 321.00㎡	693	32	0	725	
본인	전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608-1번지 17,128.00㎡	256,423	0	0	256,423	
본인	전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608-5번지 2,620.00㎡	12,942	1,023	0	13,965	
본인	전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610-7번지 460.00㎡	2,088	166	0	2,254	
본인	임야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산 61-17번지 9,913.00㎡	4,361	258	0	4,619	
본인	임야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산 61-21번지 1,235.00㎡	485	42	0	527	

소속	경상북도 청송군		직위	의원		성명	정미진
본인	임야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산 61-22번지 72.00㎡ 중 36.00㎡	15	2	0	17	
본인	전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608-8번지 128.00㎡	632	50	0	682	
본인	답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 423-2번지 15.00㎡ 중 7.50㎡	94	14	0	108	
본인	답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 435-1번지 525.00㎡ 중 262.50㎡	3,858	342	0	4,200	
본인	답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 443번지 736.00㎡ 중 368.00㎡	6,624	552	0	7,176	
본인	답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 444번지 1,551.00㎡ 중 775.50㎡	13,959	1,163	0	15,122	
본인	답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 447-5번지 947.00㎡ 중 473.50㎡	8,523	710	0	9,233	
본인	답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 447번지 502.00㎡ 중 251.00㎡	4,518	377	0	4,895	
본인	답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 472번지 1,086.00㎡ 중 543.00㎡	9,774	815	0	10,589	

소속	경상북도 청송군		직위	의원		성명	정미진
본인	대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187-1번지 0.00㎡ (241.00㎡ 감소)	26,028	0	26,028 (93,000)	0	소유권 상실
본인	임야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부일리 965번지 278.00㎡ (278.00㎡ 증가)	-	1,000 (1,000)	0	1,000	매입
배우자	전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부일리 786번지 1,261.00㎡	13,240	1,262	0	14,502	
배우자	전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부일리 879번지 1,402.00㎡	11,342	1,080	0	12,422	
배우자	전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부일리 878번지 317.00㎡	1,889	219	0	2,108	
배우자	과수원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부일리 906번지 400.00㎡	5,200	560	0	5,760	
배우자	전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부일리 919번지 384.00㎡	5,376	576	0	5,952	
▶ 건물(소계)			372,500	1,000	0	373,500	
본인	상가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건물 60.30㎡	300,000	0	0	300,000	
배우자	아파트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가람하이츠 건물 90.41㎡	62,000	0	0	62,000	

소속	경상북도 청송군		직위	의원		성명	정미진
배우자	단독주택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부일리 대지 384.00㎡ 건물 86.90㎡	10,500	1,000	0	11,5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79,480	0	13,300	66,180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에쿠스 배기량(3,778cc)	16,660	0	2,100	14,560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G4 렉스턴 배기량(2,157cc)	39,820	0	8,180	31,640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K5 배기량(1,999cc)	2,300	0	2,101	199	
장남	자동차	2018년식 K5 배기량(1,999cc)	20,700	0	919	19,781	
▶ 예금(소계)			598,006	606,169	290,077	914,098	
본인		농협손해보험 593(593 증가), 농협은행 57,179(13,018 감소), 농협중앙회 68,500(68,500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225(1,225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90,827(45,563 증가), 삼성생명보험 46,796(2,162 증가), 새마을금고 40,217(40,001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0(693 감소), 우체국 43,040(4,50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0(2,058 감소)	201,602	287,415	140,640	348,377	본인봉급, 부동산 임대수익, 예금이자 및 부동산매도, 배우자 봉급

소속	경상북도 청송군		직위	의원		성명	정미진
배우자		농협은행 59,845(7,643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61,152(17,327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9,747, 산림조합중앙회 45,000(25,000 증가), 삼성생명보험 76,000(6,000 증가), 새마을금고 40,010(40,000 증가), 한화손해보험 2,672(2,296 감소), 현대해상화재보험 1,210(660 증가), 흥국생명보험 4,288	320,876	155,652	76,604	399,924	
모		농협은행 7(7 증가), 농협중앙회 31,502(2,725 증가), 새마을금고 46,020(10,000 증가)	64,797	77,529	64,797	77,529	
장남		국민은행 180(143 증가), 새마을금고 45,010(40,000 증가), 신한은행 1, 한국카카오은행(주) 23(23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271(186 증가)	6,133	45,352	5,000	46,485	본인봉급, 부동산 임대수익, 예금이자 및 부동산매도, 배우자 봉급
차남		농협은행 40,202(36,965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581(220 증가)	4,598	40,221	3,036	41,783	
▶ 채권(소계)			70,000	0	50,000	20,000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70,000	0	50,000	20,000	사인간 채권 회수

소속	경상북도 청송군		직위	의원		성명	정미진
▶ 채무(소계)			5,000	0	0	5,000	
본인	건물임대 채무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임대보증금	5,000	0	0	5,000	
총 계			1,503,050	617,412	379,405	1,741,057	증감액: 238,007천원 (가액변동: -4,057천원)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